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00호 2018. 10. 2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1호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이전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8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539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0.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0-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539 (원창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108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4-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2로 36 (오류동)	20121025	마중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4-9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2로 32 (오류동)	20121025	마중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7-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1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검단노인복지회관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1-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44번길 6-9 (청라동)	20101111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2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03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8-10-2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173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94번길 33 (경서동)	경서동 363-173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94번길 33 (경서동)	소유자신청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경서동 363-354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94번길 35 (경서동)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1호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 인천광역시 서구 조합설립인가 (2010.11.2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3-59호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06.19.),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65호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2013.07.11.),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시행인가 변경신고 처리 (2014.09.0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4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15.01.22.),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시행인가 변경신고 처리 (2015.10.08.), 인천광역시 서구 준공인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17.12.08.),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164호 공사완료 고시 (2017.12.11.), 인천광역시 서구 사용승인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2018.01.17.),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처리 (2018.08.30.),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처리 (2018.10.22.)된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82-75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10. 29.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남인숙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 외 17필지 (확정지번 : 가좌동 611 외 13필지)

나. 면적 : 75,024.7m²

3.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남인숙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6, 3층 (가좌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15.01.22.

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처리 : 2018.08.30.

다.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처리 : 2018.10.22.

5. 준공인가일

가. 준공인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17.12.08.

나. 공사완료 고시 : 2017.12.11.

다. 사용승인-교육연구시설 (유치원) : 2018.01.17.

6. 이전고시 내역

가. 지번별 조서 (지적확정조서)

종전 지적의 표시 (폐쇄)					확정 지적의 표시 (시행)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가좌동	308	대	26331.5	1	가좌동	611	대	25143.8	
2	가좌동	308-1	대	619.9	2	가좌동	612	대	619.9	
3	가좌동	309	대	43437.9	3	가좌동	613	대	37903.4	
4	가좌동	309-1	공원	1500.5	4	가좌동	613-1	도로	261	
5	가좌동	309-2	구거	985.5	5	가좌동	614	대	450.1	
6	가좌동	309-3	대	450	6	가좌동	615	공원	1439.3	
7	가좌동	363	답	15	7	가좌동	615-1	도로	61.1	

8	가좌동	364-1	답	36	8	가좌동	616	주차장	414.1	
9	가좌동	365	도로	92	9	가좌동	616-1	도로	36.1	
10	가좌동	366	도로	31	10	가좌동	617	도로	150	
11	가좌동	367-2	도로	2	11	가좌동	617-1	공원	1924	
12	가좌동	367-3	답	22	12	가좌동	617-2	도로	4012.6	
13	가좌동	392-1	도로	8	13	가좌동	617-3	공원	1613.6	
14	가좌동	408-11	도로	1434.9	14	가좌동	617-4	도로	995.7	
15	가좌동	486-5	수도 용지	5	계	14필			75,024.7	
16	가좌동	501	구거	9						
17	가좌동	504-1	도로	6						
18	가좌동	산154	임야	16						
계	18 필			75,002.2						

나. 토지의 용도별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m ²)	소유자	비고
1	가좌동	611	대	25143.8	이전고시조서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가좌동	612	대	619.9	이전고시조서 참조	존치
3	가좌동	613	대	37903.4	이전고시조서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가좌동	613-1	도로	261	이전고시조서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	가좌동	614	대	450.1	정성조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6	가좌동	615	공원	1439.3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7	가좌동	615-1	도로	61.1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8	가좌동	616	주차장	414.1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9	가좌동	616-1	도로	36.1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10	가좌동	617	도로	150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11	가좌동	617-1	공원	1924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12	가좌동	617-2	도로	4012.6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13	가좌동	617-3	공원	1613.6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14	가좌동	617-4	도로	995.7	인천광역시 서구	정비기반시설
계				75,024.7		

다. 건축시설 내역

- ① 건축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연면적 234,594.08m²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 연면적 948.79m²

- ② 건물명칭 : 인천기좌두산위브트레지움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 새한신유치원
- 라. 건축시설 규모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계	51A	51B	59A	59B	59C	69A	69B	69C	84A	84B
계	1,757	60	185	536	60	151	102	48	296	269	50
조합원분양	971	4	86	361	46	62	87	45	100	168	12
일반분양	786	56	99	175	14	89	15	3	196	101	38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급호수										
조합원분양	12										
공급대상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조합원분양	1										

마.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주택세대별 면적(m ²)							
전용기준	구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분양구분	세대수	계	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51A	조합원	4	105.94	51.57	20.64	33.73	28.9094
	일반분양	56					
51B	조합원	86	106.21	51.66	20.76	33.79	28.7702
	일반분양	99					
59A	조합원	361	122.58	59.78	23.69	39.11	33.182
	일반분양	175					
59B	조합원	46	123.06	59.8	24.14	39.12	33.2934
	일반분양	14					
59C	조합원	62	123.04	59.74	24.22	39.08	33.2059
	일반분양	89					
69A	조합원	87	139.04	69.9	23.41	45.73	37.1045
	일반분양	15					
69B	조합원	45	138.62	69.59	23.5	45.53	37.0766
	일반분양	3					
69C	조합원	100	138.88	69.39	24.09	45.4	37.371
	일반분양	196					
84A	조합원	167	166.53	84.82	26.22	55.49	44.1697
	일반분양	101					
	조합원	1					
84B	조합원	12	166.69	84.27	27.29	55.13	44.2175
	일반분양	38					
합계		1,757	232,745.96	115,341.76	41,946.6	75,457.6	62,572.9924
근린생활시설 (상가) 면적(m ²)							
동	구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분양구분	호수	계	전용	공용		
상가	조합원	12	1,848.12	908.85	939.27	735.2076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면적(m ²)							
유치원	구분		건물면적			토지면적	
	조합원		948.79				450.1

바.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역 (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대지에 존속되는 담보권 등)

권리종류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계
건수	13	-	1	14

7. 관계서류 열람 장소 :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82-752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대관의 우선순위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업무처리에 맞게 재정비
- 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제반 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가. 체육관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 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 제 6조(대관장려 및 경합 처리기준)에 의하여 대관의 우선순위 적용함 (안 제5조)
- 나. 수영·헬스 및 교육수강 사용료는 현재 체육시설업을 적용하여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교육수강 사용료는 평생교육법

적용으로 교육수강료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5, 팩스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대관의 우선순위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업무처리에 맞게 재정비
- 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제반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가. 체육관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 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 제6조(대관장려 및 경합 처리기준)에 의하여 대관의 우선순위 적용함(안 제5조)
- 나. 수영·헬스 및 교육수강 사용료는 현재 체육시설업을 적용하여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교육수강 사용료는 평생교육법 적용으로 교육수강료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신청 접수순위”를 “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헬스장”을 각각 “수영장·헬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u>신청 접수순위에</u>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u>생활체육협의회</u>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u>----- ----- -----.</p> <p>③ ----- ----- <u>체육회</u> ----- ----- -----.</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p>1. (생략)</p> <p>2. <u>교육수강료 및 수영장·헬스장 입장료</u>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p> <p>3. <u>교육수강료 및 수영장·헬스장</u></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수영장·헬스장</u> ----- ----- ----- -----</p> <p>3. <u>수영장·헬스장</u> -----</p>

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후
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
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한 후 반환

<신 설>

4. (생 략)

4.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
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
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
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
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수영장 이용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제반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청라복합문화센터 회원중 이용료 반환에 수영장 이용료와 교육수강료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과 평생교육업을 각각 적용하여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5, 팩스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수영장 이용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제반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가. 청라복합문화센터 회원중 이용료 반환에 수영장 이용료와 교육수강료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과 평생교육업을 각각 적용하여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p> <p>① (생 략)</p> <p>② <u>납부된 강습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강습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u></p> <p><u><신 설></u></p>	<p>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수영장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u></p> <p>③ <u>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u></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련 시설점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업무처리에 맞게 재정비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조항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변경(안 제11조)
- 나. 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 일부 개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5, 팩스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련 시설점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업무처리에 맞게 재정비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조항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변경(안 제11조)
- 나. 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 일부 개정 (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연, 행사 계획서 1부.

제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프로그램이”를 “계획서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구청장”을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며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불성실”을 “불성실, 강사평가”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일일”을 “연간”으로, “진행결과를 일지”를 “수업일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원 출결상황 관리운영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수 및 비입수 지도를 병행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정차 반드시 준수”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확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생략)</p> <p>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u>. 다만, <u>프로그램이</u>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연, 행사 계획서 1부</u>. ----- ----- ----- <u>계획서가</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설점검) ① (생략)</p> <p>② <u>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u></p> <p>③ <u>구청장은</u>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p>	<p>제11조(시설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u>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며 구청장</u>----- ----- -----.</p>
<p>제13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p>	<p>제13조(강사의 위촉 해제) -----</p>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생략)
-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 3. 4. (생략)

제14조(강사의 책무) 담당강사는 성실한 강좌 운영 및 회원의 적정한 관리와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1. 강좌에 대한 교안, 일일 수업 계획 및 진행결과를 일지로 작성 보고
- 2. (생략)
- 3. 회원 출결상황관리, 불참회원 연락유지 및 기록
- 4. ~ 12. (생략)

제15조(수영 지도강사) 수영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강습 진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1. 입수 지도를 원칙으로 진행

-----.

- 1. (현행과 같음)
- 2. ----- 불성실, 강사평가 -----

-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강사의 책무) -----

-----.

- 1. ----- 연간 -----
----- 수업일지 -----

- 2. (현행과 같음)
- 3. 회원 출결상황 관리운영
- 4.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영 지도강사) -----

-----.

- 1. 입수 및 비입수 지도를 병행

2. ~ 5. (생략)

제18조(셔틀버스 운행) ① 셔틀버스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차시간 정차 반드시 준수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 6. (생략)

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여부 금지

8. (생략)

② (생략)

제19조(기전실 운영) ① 기전실 근무자는 회관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의 안전점검 확행 및 저항 측정, 선로 및 시설의 누전 점검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셔틀버스 운행)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준수 -----

3. ~ 6.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전실 운영)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수
행 -----

7.·8.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수
영장 수처리실 근무자는 수영장
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
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

--.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규칙에 없었던 예산소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민과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야기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의무 조항을 삭제해 원활한 불법유동광물 수거보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변경
- 조례 명칭 및 용어변경
- 예산 소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의무규정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재생경관과, 전화 : 032-560-4182, 팩스 : 032-560-2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규칙에 없었던 예산소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민과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야기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의무조항을 삭제해 원활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여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 반영을 도모함
- 종전의 규칙에는 예산소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여 예산소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7조)
- 종전의 과태료부과 의무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민과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 간의 부적절한 사 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단지”를 “전단”으로 한다.

제4조 중 “전단지”를 “전단”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 중 “전단지”를 “전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일”을 “1인당 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수막, 벽보, <u>전단지</u>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p>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u>전단지</u>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 ② (생략)</p> <p>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생</p>	<p><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p> <p>제2조(정의) ----- ----- <u>조례</u> ----- -----.</p> <p>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u>전단</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 ---- <u>전단</u>----- -----.</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현행</p>

략)

②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생략)

②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

4. (생략)

<신설>

과 같음)

② -----

----- 없으면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으면 -----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
----- 전단-----

----- 각호-----

----- 않는다.

- 1. 2. (현행과 같음)
- 3. 1인당 1일 -----

4. (현행과 같음)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제8조(과태료 부과)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을 지급한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
다.

<삭 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전문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원의 임기 제한 완화에 대한 세부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추가
-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임기 제한 완화(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립지원과, 전화 560-5711, 팩스 560-2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전문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원의 임기 제한 완화에 대한 세부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추가

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임기 제한 완화(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계법령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 5. (생략)</p> <p>6. <u>지역자활센터의 장</u></p> <p>7. (생략)</p>	<p>제3조(구성) ① ----- ----- ----- <u>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u></p>	<p>제5조(위원의 임기)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

----- 위촉 해제-----
--.

- 1. ~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성별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 위촉과 전문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및 세부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임명시 성별 편중을 개선(안 제2조1항)
 - 위원 임명시 성별을 고려한 조문 추가로 성별 편중 개선
- 의료급여 심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2조제2항)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과 간사를 개편된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자립지원과, 전화 560-5871, 팩스 560-2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을 개선하고자함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추가로 심의에 대한 전문성 향상
- 2018. 9.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담당부서장과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임명시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을 개선(안 제2조1항)
 - 위원 임명시 “성별을 고려하여” 조문 추가로 성별 편중 개선
- 의료급여 심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 당연직 위원 추가 : 담당 국장, 보건소 의무사무관 (안 제2조제2항)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과 간사를 개편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변경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 명칭 변경
“생활보장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정 (안 제6조제5항)
 -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수정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지명한다”를 “위촉·임명하되, 담당 국장, 보건소 의무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생활보장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p> <p>①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u>위촉·지명한다.</u></p> <p>제6조(회의)</p> <p>①~④(생략)</p> <p>⑤ 위원장은 위급한 의료급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위원회를 소집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u>생활보장과장이 전결한다.</u></p> <p>제9조(간사·서기)</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간사는 <u>기초생활보장담당</u>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③ (생략)</p>	<p>제2조(구성)</p> <p>① ----- ----- <u>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u> -----.</p> <p>② ----- ----- ----- ----- <u>위촉·임명하되, 담당 국장, 보건소 의무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제6조(회의)</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u> -----.</p> <p>제9조(간사·서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u>의료급여업무담당</u> -----.</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8-15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국민 기초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는 보훈대상자가 적절한 보장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정비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 권리 보장 근거 마련(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 전화 560-4291, 팩스 560-27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국민기초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는 보훈대상자가 적정한 보장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 권리 보장 근거 마련(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양하며”를 “널리 알리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 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u>선양하</u> <u>며</u> ,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 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 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 ----- ----- <u>널리 알</u> <u>리며</u> ----- ----- ----- ----- ----- -----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 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 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 복지 시책을 <u>강구</u> 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 <u>마련</u> -----.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생략) <u><신 설></u>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에 따른 <u>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u> <u>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u> <u>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u> <u>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u>

관한 조례」 제11조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